

## 해외예금보험 동향

2005.11

### ● FDIC 이사회, 2006년 예금보험료율 부과계획 의결

- FDIC 이사회는 2006년에도 미국 내 금융환경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여,
  - 2006년 상반기 중 은행 및 저축기관에 부과할 예금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\*으로 유지키로 의결(11.8)
    - \* 현행 부과보험료율은 감독등급 및 자기자본등급에 따라 0~27 b.p 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며, '04년말 현재 93%의 금융회사가 최우수등급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
  - 내년 하반기에는 부보대상예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금적립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료율의 조정이 있을 계획
    - 내년 상반기말 은행보호기금(BIF) 적립률은 1.22%, 저축기관보호기금(SAIF) 적립률은 1.29%로 예측하여 BIF 적립률이 목표적립률(1.25%)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, 보험료율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  - 아울러 현재 연방예금보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,
    - 법안 통과시 BIF와 SAIF의 통합\*(DIF), 보험료 공제\*\*(assessment credit) 실시 등에 따라 목표적립률 및 보험료율이 추가로 변동할 수 있음을 밝힘
      - \* 기금통합시 예상 적립률은 1.20%~1.29%이며, 내년 상반기 말 통합기금 적립률은 1.24%로 예상
      - \*\* 일정 적립률을 초과하는 기금을 초기 공제대상 금액(initial credits)으로 설정하고 부보금융회사앞 할당하여 동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차기 납부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

## ● FDIC와 OCC, Basel II 적용에 대한 권고

▶ FDIC의 Powell 의장 및 OCC의 Dugan 청장은 미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Basel II 적용계획 권고사항을 언급(11.10)

□ FDIC Powell 의장은 최근 26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계량영향분석(QIS4, 4.29 실시) 결과, **Basel II의 도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**

○ 대부분의 은행들이 Basel II 기준 적용시 **필요규제자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므로, 현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**

□ OCC Dugan 청장도 **필요규제자본의 감소 가능성을 염려**

○ 기존 자본규제안과 Basel II 기준안의 **전환기간(transition period)을 두고, 동 기간동안 자본감소 한계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**

연 도	한계치(floor)	비 고
2008	-	병행산출
2009	95%	Basel II 도입
2010	90%	-
2011	85%	-

## ● OTS, J.M. Reich 이사 금융감독 관련 개선사항 발표

▶ 美 저축기관 감독청(OTS) Reich 이사는 지역은행연합회(Community Bankers Association) 연설에서 저축기관 감독시 **신종 모기지 상품(non-traditional mortgage)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 주장(11.18)**

□ 최근 신종 모기지 상품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○ 특히 일정기간(일반적으로 5, 7, 10년)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“interest-only” ARMs(adjustable rate mortgages)와 매달 발생 이자의 일정금액만 납부하고 잔여 미상환이자는 원금에 계상하는 “pay option” ARMs이 크게 증가

○ 동 상품들은 금리인상시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나 **원금 미상환의 리스크를 가중시킴(특히 “pay option”의 경우 리스크가 큼)**

- 따라서 동 상품에 대한 **대출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,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**